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689호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Ethanolamine,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2922.11.1000호, 제2922.12.1000호, 제2922.15.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0일 이후 수입 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미국	1. 다우(Dow Chemical Company)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1.79
	2. 헌츠만(Huntsman Corporation)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1.79
	3. 이네오스(INEOS)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1.79
	4. 그 밖의 공급자	14.47
말레이시아	1. 페트로나스(Petronas Chemicals Derivatives Sdn. Bh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2.64
	2. 그 밖의 공급자	12.64
태국	1. 티오시(TOC Glycol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15
	2. 그 밖의 공급자	18.15
일본	1. 미쓰이(Mitsui Chemicals Inc.)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1.79
	2. 에프알피(FRP Service & Company)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1.79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3. 간사이(Kansai Paint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1.79
	4. 그 밖의 공급자	21.79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50호, 2014. 12. 30.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령 제690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005.21.4000호, 제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제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공한 유리는 제외한다.

1.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 :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호 각 목의 공급자로서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